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1082

발의연월일: 2021. 6. 24.

발 의 자:전봉민·김도읍·김희곤

백종헌 · 서범수 · 서일준

안병길 · 양금희 · 정동만

황보승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(이하 "장애인등"이라 함)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, 배기량이 2,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배기량이 2,000cc를 초과하면서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등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,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는 아니므로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엄격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,500cc까지 상향하되, 2,000cc 초과 2,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%, 2,500cc 호과 3,000cc 미만은 50%, 3,000cc 이상 3,500cc 미만은 30%를 감

면하고,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제1호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3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. 다만, 제 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.
 - 가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2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.
 - 나. 배기량 2천500시시 초과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 - 다. 배기량 3천시시 초과 3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.

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 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"를 "제1호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3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. 다만, 제 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.
 - 가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2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.
 - 나. 배기량 2천500시시 초과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 - 다. 배기량 3천시시 초과 3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) ① -----장애인(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"이라 한다) 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「지 방세법 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 "자동차세"라 한 다)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호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31일까지 면제한다.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 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 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.

1. (생략) <신 설>

- 2. ~ 4. (생 략)
- ② ③ (생 략)
- 면) ① ~ ③ (생 략)
 - ④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 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3천 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. 다만,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.
 - 가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2천 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 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. 나. 배기량 2천500시시 초과 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 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. 배기량 3천시시 초과 3천 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 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.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제29조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4	 	 	

정하는 사람(이하 "국가유공자 등"이라 한다)이 보철용·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(稅目)에 대하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1. (생략) <신 설>

<u>제1호, 제2호부터 제4호</u>
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
<u>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</u>
제하고, 제1호의2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
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
차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
<u>까지 경감한다</u>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3천 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. 다만,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.

2. ~ 4. (생 략)

⑤ (생략)

가. 배기량 2천시시 초과 2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.나. 배기량 2천500시시 초과3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다. 배기량 3천시시 초과 3천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